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3,858,640	16,915,759
일반회계	543,283,881	16,298,516
특별회계	20,574,759	617,243
공기업특별회계	10,088,023	302,641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0,088,023	302,641
기타특별회계	10,486,736	314,602
의료보호특별회계	2,284,650	68,54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39,672	25,19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727,077	51,812
주택사업특별회계	927,380	27,82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14,060	48,422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3,093,897	92,81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해당없음"으로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514,36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지방채차입한도액은 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